

2024 신천중학교 학교규칙 신·구 대조표

항목	변경 내용	
	현 행 (2023년도)	개 정 안 (2024년도)
제5장 제11조 (교육과정)	<p>제11조(교육과정)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.</p> <p>②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으로 교과(군)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.</p> <p>③ 교과(군)는 국어/ 사회·역사·도덕/ 수학/ 과학·기술가정·정보/ 체육·예술(음악, 미술)/ 영어/ 선택(직로와 직업·한문)/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편성한다.</p> <p>④ 창의적 체험활동은 '자율활동', '동아리활동', '봉사활동' 및 '진로활동'으로 편성한다.</p> <p>⑤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1학기 2학기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, 2.3학년은 연계자유학년제로 1학기 2학기에 연계자유학년제를 실시하며,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 (교육과정 편성·운영)</p> <p>① 학교·학년·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, 교육감이 제시한 '경기도교육과정편성·운영지침' 및 경기도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.</p> <p>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.</p>
제5장 제14조 (평가)	<p>제14조(평가) ① 정기평가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단,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1, 2학기 모두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만 실시한다.</p> <p>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관할청의 지침에 따라 본교가 정한 '학업성적관리규정'에 따라 평가한다.</p>	<p>제14조(평가)</p> <p>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한다.</p> <p>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</p> <p>④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
제7장 제27조 (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구성)	<p>제27조(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구성) 위원장은 교감, 간사는 교무기획부장으로 혁신교육연구부장, 학생체육안전부장, 해당 학년부장, 성적담당교사, 교육정보시스템담당교사 및 평가 담당교사로 한다.</p>	<p>제27조(조기 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~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

항목	변경 내용	
	현 행 (2023년도)	개 정 안 (2024년도)
제11장 학칙 개정 제 40조 (학칙개정절 차)	<p>제40조(학칙개정 절차)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</p> <p>② 기타 학칙 개정안의 제안 방법,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40조 (학칙개정 절차)</p> <p>① 공(사)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.</p> <p>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「경기도 학생인권 조례」제46조에 따라 학부모, 학생,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,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. 재직 교원의 과반수 3. 학부모 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 4. 학생회 대표(학생회의 의결서 첨부) 5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<p>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</p> <p>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,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</p>